

[별표 4] <개정 2006.9.22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2조 관련)

(단위 : 만원)

| 위반행위 | 해당법조문 | 과태료 금액 |
|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1호 | 300 |
| 2.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·처리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2호 | 100 |
| 3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3호 | |
| 가.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| | 300 |
| 나.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| | 150 |
| 다. 그 밖의 영업자 | | 20 |
| 4.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3호 | |
| 가.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| | 150 |
| 나.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| | 100 |
| 다. 그 밖의 영업자 | | 10 |
| 5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(도축업에 한한다) | 법 제47조제1항제4호 | 300 |
| 6.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(도축업에 한한다) | 법 제47조제1항제4호 | 150 |
| 7. 법 제10조의2을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·운반·진열 또는 판매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5호의2 | 100 |
| 8.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5호의3 | 100 |
| 9. 법 제25조 또는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6호 | 30 |
| 10.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7호 | 30 |
| 10의2.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7호 | 100 |
| 11.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8호 | |
| 가.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| | |
| (1)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| | 50 |
| (2)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| | 30 |

| | | |
|--|---------------|-----|
| 나.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| | |
| (1)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| | 30 |
| (2)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| | 20 |
| 12.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8호 | 100 |
| 13.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9호 | 30 |
| 14.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10호 | |
| 가.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| | |
| (1)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| | 30 |
| (2)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| | 20 |
| 나.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 | | |
| (1) 대상자의 50퍼센트 이상 위반 | | 20 |
| (2) 대상자의 50퍼센트 미만 위반 | | 10 |
| 15.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체검사원을 그 검사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10호 | 10 |
| 16.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·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11호 | 50 |
| 17.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12호 | 200 |
| 18.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| 법 제47조제1항제13호 | 50 |

※ 비 고

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